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7. 5. .
발 의 자	양진오의원 외 5명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5. .

발 의 자 : 양진오 · 김인배 · 김상조 · 김정곤 · 박교상
정근수 의원(6인)

1. 제안이유

- 가. 상수도 사용 요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2016년 7월)

2. 주요내용

- 가. 체납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안 제37조)
- 종전 : 가산금 3%(고정비율)
 - 개선 : 납기 경과 후 1개월 범위 내 가산금(3%)를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징수
- ※ 산정식 :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 나.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누수량의 요금감면(안 제41조의2)
-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4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1/2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초·중등교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체납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산정식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text{가산금} = \text{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text{체납일수}/\text{월력일수})$$

제41조의2제1항 본문 중 “가정용으로서”를 “가정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 기타 변상금, 과태료등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체납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산정식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text{가산금} = \text{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text{체납일수}/\text{월력일수})$
제41조의2 (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시장은 가정용으로서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41조의2 (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 가정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 ----- ----- -----. ----- -----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 ④ 생략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요금 체납시 가산금을 일괄 3% 부과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안 제37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1년간 7만여 건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부과 방식을 변경할 경우 세입 감소액을 추계한다.

나.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연간 세입액이 3천여만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1] 연도별 세입 감소액

(단위:천 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6월)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합 계	△ 15,336	△ 30,671	△ 31,437	△ 77,444
가산금	△ 15,336	△ 30,671	△ 31,437	△ 77,444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5. 부대의견

- 상수도 요금 가산금을 납부일자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세입 감소분은 상수도 요금 인상('16년에서 '20년까지 연도별 2.5% 인상)으로 충당될 것으로 기대
-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누수량의 요금감면의 경우 신청 건수가 적어 (연 1~2회 정도, 100톤 누수시 7만원 정도 감면) 비용추계에서 제외

6. 작성자 : 업무과 이상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감소 내역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시)

※ 적용 예시: 당월분 10,000원을 납기 15일 후 납부했을 경우

- 기존(고정비율)

$$10,000\text{원(본세)} * 3\%(\text{가산금}) = 10,300\text{원}$$

- 변경(일할계산)

$$10,000\text{원(본세)} * 3\%(\text{가산금}) * 15/30(\text{체납일}) = 10,150\text{원}$$

- 가산금 감소액 : 150원